



<b>의안번호</b>	<b>제158호</b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**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**

<b>발 의 자</b>	<b>서 원 의원 외 6명</b>
<b>발의연월일</b>	<b>2019. 10. 14.</b>

#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58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14.  
대표발의자 : 서 원  
공동발의자 : 박승용 박영자  
조용훈 김남충  
최정숙 차경선

## 1. 제정이유

○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~제2조)
- 나.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설치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라. 투광기 설치 및 예산 확보, 협력체계 구축,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규정(안 제7조~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교통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
  - 1) 조례안 : 별 첨
  - 2) 입법예고: 2019. 10. 15.~2019. 10. 21.(5일간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횡단보도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2. “투광기”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.
3. “무단횡단 금지시설”이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중앙선”이란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「도로교통법」 제10조 및 「도로법」 제10조와 관련하여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적용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
**제5조(설치계획 수립)**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·무단횡단 금지시설·중앙선(울타리)(이하 “교통안전시설물”이라 한다)설치와 개선

계획 등을 수립 하여야 한다.

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·유지·관리 하여야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 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
**제7조(투광기 설치 등)**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·관리할 수 있다.

②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하여야한다.

③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·구조·형태 및 교통량,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
**제8조(예산확보)**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,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원 의원 외 6명

**□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□ 「도로교통법」**

제10조(도로의 횡단)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, 지하도,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

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.

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.

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